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107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10-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2-01

스타일맨

정보공개서

(주)제이엠헤어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제이엠헤어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522-9966

F A X : 02-522-997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522-9966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5길 75, 2층(고척동)

홈페이지 : www.stylemanhair.kr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제이엠 헤어존	스타일맨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5길 75, 2층(고척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8.08.	2019.08.13.	김정수	02-522-9966	02-522-9976
	법인등록번호	110111-7197381	사업자등록번호	722-87-0143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 정 수	스타일맨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5길 75, 2층(고척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 정 수	02-522-996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이 홍 재	스타일맨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5길 75, 2층(고척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 정 수	02-522-996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내역은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스타일맨	
상 호	스타일맨 OO점	
상표(서비스표)	스타일맨	등록번호 4103391090000(2015.11.24)
	STYLEMAN	등록번호 4103550380000(2016.04.06)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년	19,414	38,036	-18,622	2,500	-37,690	-36,714
2021년	20,448	39,123	-18,675	2,900	-1,905	-53
2023년	21,179	37,690	-16,511	0	-1,919	-1,942

2) 당사의 최근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상기와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정수	대표이사	2019.8.~현재	대표	회사경영 총괄
	이홍재	사내이사	2019.8.~현재	이사	가맹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스타일맨 (상표권)	서비스 사용 및 대가 수수	2015.11.24. 등록 2015.01.15. 출원	등록 4103391090000 출원 4120150001976	이홍재	2025. 11.24
STYLEMAN (상표권)	서비스 사용 및 대가 수수	2016.04.06. 등록 2016.01.14. 출원	등록 4103550380000 출원 4120160004284	이홍재	2026. 04.06

당사는 상표출원자인 이홍재와 상표권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스타일맨]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9. 11. 12

2. [스타일맨]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제이엠헤어존	스타일맨	김 정 수	2019.11 ~ 2020.08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C-719호(마곡동)
(주)제이엠헤어존	스타일맨	김 정 수	2020.08 ~ 현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5길 75, 2층(고척동)

3. [스타일맨] 업종

영업표지	업종	
스타일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	남성 미용실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	4	4	·	4	4	·
서울	2	2	·	2	2	·	2	2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	2	·	2	2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	-	-	-	4
2022	4	-	-	-	-	4
2023	4	-	-	-	-	4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스타일맨]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 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 체	4	101,950	8,649	129,000	9,675	80,000	7,213	
서 울	2	-	-	-	-	-	-	5개점 미만
부 산	-	-	-	-	-	-	-	-
대 구	-	-	-	-	-	-	-	-
인 천	-	-	-	-	-	-	-	-
광 주	-	-	-	-	-	-	-	-
대 전	-	-	-	-	-	-	-	-
울 산	-	-	-	-	-	-	-	-
세 종	-	-	-	-	-	-	-	-
경 기	2	-	-	-	-	-	-	5개점 미만
강 원	-	-	-	-	-	-	-	-
충 북	-	-	-	-	-	-	-	-
충 남	-	-	-	-	-	-	-	-
전 북	-	-	-	-	-	-	-	-
전 남	-	-	-	-	-	-	-	-
경 북	-	-	-	-	-	-	-	-
경 남	-	-	-	-	-	-	-	-
제 주	-	-	-	-	-	-	-	-

8. [스타일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도	4	3년 7개월(1,31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계	비공개	비공개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주소
KB국민은행	각 지점 및 인터넷 뱅킹

귀하는 상기 표의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의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우측의 더보기 메뉴에서 기업서비스 선택 > SOHO센터 > 가맹금예치제도 > 가맹점사업자 > 가맹예치금 예치 > 이용약관 동의 > 가맹본부 조회 후 스타일맨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의 예치금 입금내역은 예치내역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5,500천원(Vat포함)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없 음(무상교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1,000천원(Vat없음)

가. 최초 가맹금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교육비	없 음				

나. 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1,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의 제외하고 반환	1. 계약종료시 잔존채무액을 공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 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의 금액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6,500
가맹비	5,500
교육비	.
보증금	1,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99㎡기준 (40평)	면적 3.3㎡당 금액			
총계		42,900	4,290			10평 기준
간판/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26,400	2,640	공사1일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3.3㎡ 늘어날 때마다 2,640천원 추가부담
집기/가구류	협력업체 (미지정)	6,600		물품 공급 1일 이전	공급 발주 전 계약해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초도물품비	협력업체 (미지정)	6,600		물품 공급 1일 이전	공급 발주 전 계약해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판촉 및 홍보 등 기타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3,300		가맹개설 전일까지	공급 발주 전 계약해지	
POS	협력업체 (미지정)	임 대		가맹개설 전일까지	공급 발주 전 계약해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설계도면 제공비 일금 오백오십만원(5,500,000원/Vat포함)과 감리비로 3.3㎡ 당 일금 삼십만원(330,000원/Vat포함)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구함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만18세 이상일 것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가.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부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V.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39.6 (정액제)	익월 10일	선불로 반환 없음		자동이체 신청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 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됨	전국광고 지역광고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산출근거에 의한 비용청구	교육 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추정비용)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POS 임대료	협력업체 (미지정)	실 비	익월 10일			자동이체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2023)년도에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귀하는 당사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재가맹비	없 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추가 교육비	실 비	추가교육 전 7일이내	계약연장(갱신) 전 계약포기	교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 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가맹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양수인은 가맹금 중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스타일맨 브랜드임을 알 수 있거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계약종료 후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법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① 간판철거
- ② 매뉴얼, 메뉴북 반납
- ③ 폐업사실증명원(폐점 시)
- ④ 로고용품 반납 or 폐기
- ⑤ 미수금 입금
- ⑥ 인테리어 철거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본부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조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POS 기기는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가맹본부에서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OS 프로그램은 스타일맨 브랜드의 매출추이, 추정 손익산정 등 가맹점을 통합 관리함에 있어 주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함으로 강제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스타일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일체의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스타일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남성펌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 : 계약해지	2023년 기준
염 색			
남성컷			
두피케어			
본사 지정 미용관련제품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남성 펌	기본펌	28,000	사전 통지	2024.4월 기준 (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특수펌	48,000		
	다운펌	18,000		
염 색	멋내기 염색	23,000		
	새치 염색	18,000		
	탈색	23,000		
남성컷	기본컷	11,000		
	디자인컷	13,000		
두피케어	두피스트레스케어	11,000		
	각질제거케어	13,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남성 이미용 전문점	가맹본부	계열회사
	스타일맨	해당 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단, 역세권이 다른 경우 또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로 상권이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 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대형건물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 지역으로 본다.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스타일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 당사는 서비스 업종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 당사는 서비스 업종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가. 가맹계약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	-

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갑"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상품대금의 반복적인 연체, 정기 납입경비, 채무불이행의 경우 4. "을"이 본 계약상의 "을"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가맹계약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저당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갑"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갑"의 영업표지를 "갑"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6. "을"이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7. "갑"이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8. "갑"이 규정한 가맹점 운영의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9.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제39조 1항

10. 기타 “을”이 “갑”과 당사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9조2항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협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계약서(안) 검토 → 승낙여부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결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금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

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귀하가 [스타일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남성 이미용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일수는 제한하지만 영업시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부터 20:30까지 (권장)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5일이상 매장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서면으로 사유와 휴업기간을 명시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단, 휴업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점주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스타일맨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총액의 50%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 분담액 명세서를 통지 → 가맹점 광고 불참 시 사유를 당사에 서면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함 → 통지 후 7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 → 광고 시작 → 가맹점사업자 사용내역 요청 시 당사는 제시함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지역별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60%	광고비 총액의 40%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팜플렛, 전단,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 가맹점 행사 참여를 당사에 통보 → 불참 시 서면으로 통보 후 당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행사 시작	월별 판촉 행사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그 광고 및 판촉활동을 목적, 내용 및 광고물 일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

- ① '갑' 은 '을'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발생 시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와 해지 이후 1년간 '갑'의 영업 비밀보호와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③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④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침해일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당 일금오십만원정(₩500,000)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⑤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만약 '갑'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을'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가맹점 개점 이전에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을'은 최초 가맹금에서 일금이백만원정(₩2,000,000)을 위약별로 지급한다.
- ⑥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10평)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p.10~12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점포 현황문서 제공	D-60~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D-55~45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4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40(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9~37(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6(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0~10(3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 부 내 역
점포환경개선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2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2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	비고
신규 교육	2일	무 상	최초 계약 시 이수
양수 교육	2일	3,300	양수자 부담
특별 교육	1일	실 비	

[※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 통지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수준입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을 경우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 불이수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관리자는 최초 영업개시 전(개점 7일전까지)에 '갑'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영업 개시를 승인 받을 수 있다.	제13조 1항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 | | |
|--------------------------|-----|
|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1 |
| 2.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별-2 |
| 3.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3 |
| 4.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 별-4 |
| 5.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별-5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금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스타일맨]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스타일맨]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